

[현장논단]

당사자의 언어를 ‘교정’해야 하는가

조미정*

필자는 정신장애인 일상쉼터 ‘회복의 공간 난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곳의 온라인 활동 중에는 당사자 활동가의 칼럼이 있다. 모든 활동가가 돌아가면서 회복에 대한 칼럼을 쓰곤 한다.

한 중증장애인 활동가가 고심 끝에 건넨 원고에는 오타자와 비문, 잘못된 띄어쓰기가 많았다. 문단 구분도 되지 않았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읽을 수 있도록 정제된 형태로 글을 ‘교정’하여 주었다. 오타자와 비문, 띄어쓰기를 고치고 문단 구분을 하고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내용을 재배치하니 정제되고 읽기 쉬운 글로 재탄생했다. 그 글은 현재 3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글의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글은 초고와 아주 많이 달라졌다. 결과적으로 내용의 큰 열개만 유지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고는 거칠기는 해도 당사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생동감이 있었는데, 내가 교정한 글에서는 글이 좀 ‘암전’해져버렸다.

나는 세바다 대표를 하면서 2022년에 질병권단체 ‘다른몸들’과 한국여성민우회와 ‘약자생존’이라는 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다. 그 행사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약자들이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주류사회의 정상성을 거부하는 것을 의의에 두었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이라는

*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 대표, 후견신탁연구센터 팀장, 더인디고 집필위원

부스가 있었다. 그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나를 미치게 하는 순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부스였다. 그 부스 역시 다양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문구로 가득했다. 그런데 한 문구가 논란을 일으켰다.

“청소년보호법은 일진들의 보호법 같다. 피해자가 사는 곳은 지옥”

그것을 본 청소년 운동가는 행사에 더는 참여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 문구는 사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이 쓴 것이 분명했지만, 청소년 운동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이유도 충분했다. 다른 청소년을 일진으로 칭하는 것은 상황적, 개인적, 사회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진’ 청소년만 비난하고 혐오하는 발화로 읽힐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문구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불투명한 테이프로 가려져 버리고야 말았다.

정리회의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기획자는 “그 문구를 신기 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당사자의 살아있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라고 말했다.

학술지 <인권연구>에 왜 쓸데없이 운문 이야기를 하는가? 법학자는 가장 정제된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법은 문자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법 조항을 이루는 단어 하나하나, 어미의 선택, 어순의 배치에 따라 의미와 적용 대상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자칫하면 고려 없이 만들어진 조항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과거의 법조문에서는 엄밀한 단어 사용을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많은 조문이 알기 쉽게 다듬어졌으나, 아직도 법령은 정신적 장애인에게 어렵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각종 법령과 규칙을 다듬어 온 법조계는 언어를 다루는 데에도, 언어를 교정하는 데에도 능숙하다. 그래서 정제된 언어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2008년,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사범이 자신의 수강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모두 무죄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신빙성을 부인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¹⁾.

같은 피해자가 증언한 것이고, 그간에 장애유형과 상태도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사가 판결하는지에 따라 증거능력과 유죄 여부가 달라진 것이다.

‘도가니 사건’으로 유명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표현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묘사가 직접 경험하였다고 볼 만한 것인지, 제3자들을 통해 기억이 변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러 심리전문가들의 평가의견은 어떠한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²⁾.

이러한 사례들은 법조계가 당사자의 언어를 비당사자의 잣대로 평

1) 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노1652 판결;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장애인 피해자 진술 적극 인정되나…성폭행 1심 무죄, 2심 구속”, 2011. 11. 18자.

2) 법률저널, ‘대법원 “장애자의 진술도 신빙성 인정해야”’, 2013.04.26자.

가한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당사자는 정제된 언어로 진술할 것을 요구받는다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의 법적, 의학적 기준상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능력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으로 대표되는 정신적 장애인은 정도는 달라도 정신기능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정신적 장애 당사자의 언어는 오히려 일관성이 없고 거친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필자처럼 정제된 언어로 말하는 당사자가 오히려 드물지 않을까?

정신적 장애인의 언어는 거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당사자의 언어로 당사자의 언어를 규율하고 있다. ‘능력자’의 언어로 ‘제한능력자’의 언어를 규정하고 있다.

법학에서 말하는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법리적으로 완전하게 증언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중증 정신적 장애인을 제한능력자로 규정하고 여러 권리능력을 부정하면서, 증언할 때에는 완전하게 증언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순 아닌가? 그러한 모순 때문에 정신적 장애인들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하지도 못하고 있다.

법조계는 능력과 무능력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무능력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장애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법조계가 해야 할 일은 인권적 관점에서, 제한능력자의 언어를 능력자의 언어와 동등한 자격으로 고려하는 일이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정제와 교정을 강요하지 말라.